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. 1. 25 선고 2021가단322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포항시 북구 C 대 232㎡ 중,
가.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ㄴ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8㎡ 지상의
화장실과 창고 건물, 위 도면 표시 바, 사, 오, 자,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108㎡
지상의 본채 건물, 위 도면 표시 차, 카, 테, 프, 헝, 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15㎡
지상의 별채 건물을 각 철거하고,
나. 위 (가) 부분 28㎡, (나) 부분 108㎡, (다) 부분 15㎡을 각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신진우

별지